

정부, 본회 양돈업 자조금 사업규정 승인

◇…농림수산부는 6월 1일 본회가 지난 2월 6일 제출한 양돈업 자조금 사업 규정(안)을 승인했다. 따라서 본회는 금년부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자조금사업을 본격 시행해 나갈 방침인데, 정부는 금년에 본회와 양계협회에 각각 1억5천만원의 자조금을 보조하고, 앞으로 자조금사업을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양돈업 자조금 사업규정 전문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주>..... ◇

양돈업 자조금 사업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돈업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돈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회라 함은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를 말한다.
2. 정관이라 함은 본회 정관을 말한다.
3. 자조금사업회원이라 함은 본회 회원여부에 불문하고 자조금사업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4. 임원이라 함은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말한다.
5. 이사회, 총회라 함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말한다.

제 3조(명칭) 본 자조금 사업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양돈업 자조금 사업(이하 "자조금사업")이라 칭한다.

제 4조(사업) 자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육조절사업
2.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
3.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5. 생산성 향상 및 상품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6. 소비자 및 생산자 계도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7.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업

제 5조(사무소 소재지) 정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소재지와 같다.

제 6조(자조금사업 및 참가자격) 자조금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회원이거나 비회원을 불문하고 본

회정관 및 본규정을 찬동하는 양돈업을 하는 자로 한다.

제 7조(자조금사업 가입, 탈퇴) ① 제6조 규정에 의한 자조금사업 참가자격을 가진 자가 자조금 사업에 참가코자 할 때는 별표“1”의 자조금 사업 참가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가입이 확정된다.

②회장은 1항에 규정에 의거 확정된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동태를 파악한 결과 전업, 폐업 등으로 회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자조금사업에 참가한 회원이 탈퇴코자 할 때는 별표“2”의 탈퇴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확정된다.

제 8조(자조금사업 참가자격 상실 및 제명) ① 자조금사업 참가 자격 상실 및 제명에 대한 사항은 정관 제9조 및 1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7조의 ③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제명,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자조금사업 회원에서 제외된 경우 기납부한 자조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자조금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단, 자조금 관리 운영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 9조(자조금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적립금
2.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3. 회원 및 관련업계의 특별 협찬금
4. 자조금 운영에 따른 기타 수익금

제 10조(자조금 조성기준 및 납부방법)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조금사업에 참가한 회원은 매년 전년도 양돈산물 생산가액의 10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회가 별도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자율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 납부 기준은 매 회계년도에 운영위원회에

서 조정하여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확정한다. 단, 양돈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제9조 제 3호에 의한 특별협찬금을 납부코자 할 때는 납부기준 및 납부 시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별 자조금 납부액을 월간 양돈지 등에 공표하거나, 개별 통지하여 납부를 독려할 수 있다.

제 11조(자조금 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조금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현직 회장, 부회장이 각각 겸임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5.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6.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따른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기능 및 기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회장이 정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12조(회계) ①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회에 자조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② 자조금사업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13조(자조금사업 운용계획) ① 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자조금사업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사회를 거쳐 총회 의결후 농림수산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운용계획을 수정 시행할 때도 또한 같다.

② 회장은 자조금사업 운용계획 작성시 세입예산에는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세출예산에는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직접사업비와 자조금 사업을 운용하는데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 관리비성 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 14조(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① 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 13조 규정에 의거 자조금사업 운용계획이 확정되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5조 제 3항 내지 제 4항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보조금을 사용코자 할 때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5조 제 5항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사용한 후 집행잔액이 생겼을 때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반관리 운용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15조(자조금의 지출제한) 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사업 운영계획을 시행코자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자조금을 납부한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 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등 관리성 경비는 자조금사업 연간 총예산액(결산액 기준)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 16조(자조금사업 실적 보고 등) ① 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실적(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원회와 이사회를 경유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조(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① 자조금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연도의 자조금 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이입한다. 단, 보조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제 1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반납 처리한다.

② 자조금사업 운용계획 시행중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 하여야 한다.

제 18조(차입금) 회장은 자조금사업의 운영관리상 차입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조금의 부담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19조(관리기구) ① 자조금사업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무는 본회 직제규정에 의한 자조금사업 관장부서에서 담당 추진토록 한다.

② 제 1항 규정에 의한 자조금사업 담당부서의 소요 인원은 규모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제 15조 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본회 급여규정과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지급한다.

제 20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정관 및 다른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